

「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
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명희 의원 외 12명

2. 제안이유

-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개정으로
〈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〉 설치 의무화에 따라 위원회 신설과
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사업의 확장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
및 지위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종합계획의 수립 개정(안 제6조)
- 실태조사 개정(안 제7조)
- 처우개선 등 사업 추가(안 제8조)
-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(안 제9조~제15조)
- 사회복지사 지위향상을 위한 포상(안 제16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등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2. 10. 12. ~ 10. 17.) 결과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인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의 개정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관련 법률과 조례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규정이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지원은 그동안 미흡하였음.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권익보호,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심의할 <처우개선위원회>가 설치되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며, 본 조례 개정에 상위법 위반 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.